

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29 |
|----------|-----|

2019년 9월 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9년 8월 7일
- 다. 회부일 : 2019년 8월 13일
- 라. 상정일 :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9년 8월 2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엄연숙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

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42조의2
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
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,

-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) 위탁 사무 내용

○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

○ 가출청소년의 보호·상담·선도·수련활동·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

○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

○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
○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,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4)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-16
- 시설규모 : 34.8평(115 m^2)
 - 지층 3.5평(11.5 m^2) / 1층 16.5평(54.7 m^2) / 2층 14.8평(48.9 m^2)
- 개소일자 : 2014. 04. 01
- 이용대상 :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(여, 정원 8명)
- 보호기간 : 3년 이내 중장기보호

5) 위탁기간 : 3년 (2020.01.01 ~ 2022.12.31.)

6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7) 소요예산 : 302,016천원

- 인건비 89,208천원, 사업비 167,115천원, 운영비 45,693천원

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(금천구 독산동)는 정원 8명으로,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, 위탁기간 만료(2019.12.31.)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, 시의회 동의(2012.7.9.)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〈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
 - 시설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-16
 - 시설규모 : 115㎡(지층 11.5㎡, 1층 54.7㎡, 2층 48.9㎡)
 - 개소일자 : 2014.4.1
 - 이용대상 :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(여, 정원 8명)
 - 보호기간 : 3년 이내 중장기보호
 - 위탁기간 : 3년 (2020.1.1 ~ 2022.12.31.)
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 - 소요예산 : 302,016천원
 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.
-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사업 관련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위기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민간위탁의 근거로 강조하고 있음.

〈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민간위탁 현황 〉

- 재계약 횟수 : 1회, 총 수탁기간 : 6년
 - 2014. 1. 1~2015. 12.31 1차 1년 한국청소년연맹 지명위탁계약
 - 2015. 1. 1~2017. 12.31 2차 3년 한국청소년연맹 위탁
 - 2018. 1. 1~2019. 12.31 3차 2년 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

-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은 8명이나, 정원의 87.5%를 초과한 15명을 보호하고 있으며, 2019년 총 8명(가정복귀 4명, 자립1명, 기타 3명)이 퇴소하였고, 청소년보호 사업과 함께 자립준비에 대한 지원, 지역사회에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〈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퇴소현황 〉

| 연도(명)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(1월~6월)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연인원 | 2,472 | 2,882 | 1,254 |
| 퇴소인원 | 8 | 2 | 8 |

〈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청소년 이용현황 〉

(단위:천원)

| 구분 | 생활인원 | 평균 생활기간 | 퇴소유형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|----|
| | | | 가정복귀 | 자립 | 기타 |
| 2017 | 15 | 165 | 1 | 6 | 1 |
| 2018 | 10 | 288 | 1 | 1 | |
| 2019 | 15 | 84 | 4 | 1 | 3 |

-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최근 3년간 3회의 지도·점검과 평가를 받았고, 인사(내부인사위원회 미 구성, 직원 채용 전 성범죄 조회 미실시, 근로계약을 법인명이 아닌 시설명으로 작성, 취업규칙 미작성, 증빙자료 없는 지출 등), 회계(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, 설비공사 산출기초조사서 누락 등), 물품관리(재물조사 결과와 대장 불일치, 재산 대장 관리 미흡), 운영(시설운영 규정 미승인 상태, 출장시 사전결재 문서 부재, 운영위원회 단기쉼터와 연계 개최 및 서명부 미비치) 분야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, 3년간 지도·점검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으로 인사,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이 적출되고 있음.

〈 최근 3년간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지적사항 〉

- 市 조례 시설별 직급별 정원범위 기준으로 정원 4명이나, 현원 5명(소장 직무대리 1, 상담원 1, 인권 상담 및 행정보조1, 생활지도사 2) 근무하며, 취사원(1명)은 시간제 근무하고 있음
- 시설운영규정을 제정은 하였으나('17년7월) 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
-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수탁자(법인)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나, 소장은 “법인”, 직원은 시설명의인 “금천중장기쉼터”로 작성하였고,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나, 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미흡
- 취업규칙은 작성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
- 회계 지출시에는 지출목적(행사시에는 행사목적, 간담회시에는 간담회목적 등)을 명시하고 구체적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나, 지출목적과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사례가 있음
- 전문가 상담비 지출의 경우 상담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(사례선정 → 접수 → 진단 처방→ 환류 등 전문가의 활동)자료 미흡
-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된 식비를 처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식비를 월 3만원을 수납하여 식사 제공하고, 생활지도사 2명은 식비를 수납하지도 않고 식사를 제공함.
-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직·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나, 전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음.
- 시설 예산 편성시 맞춤형 복지시행경비를 능력개발비로 편성, 당초 예산 편성과목과 다르게 편성.
- 2018년 2건(지하실 배수 펌프공사, 식당천정 유도 방수 및 창호외벽), 2019년 1건 (주방하수구 설치공사)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“산출기초조사서”를 작성하지 않고, 준공시에는 “검수조서”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음.
- 재물조사 결과 및 재물관리대장 내역서 불일치, 비품/ 소모품/ 재산대장은 있지만 관리가 미흡
- 쉼터 건물 및 각 물품의 소유자는 ‘서울시’이므로 피보험자는 서울시로 해서 가입하여야 하나 피보험자(시설)로 가입되어 있음. 평가일(4.12) 현재, ‘19년 사업에 대한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미가입
- 이용자 대상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있지만 위원회 출석 서명부는 타 시설(금천단기)과 연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관계로 서명부는 비치되어 있지 않음(회의참석 사진은 관리)
- 시설 자체평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, 평가결과를 반영한 향후 개선, 발전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
- 운영보고서 책자 발간, 기념품 제작 등 홍보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, 홍보 효과 모니터링 결과는 없음

-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인력운영에 있어 신림단기쉼터와 금천단기쉼터가 수용인원이 같음에도 관련 규칙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[별표2])과 달리 운영 인력 정원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으며, 중장기쉼터의 경우, 원장, 생활지도사 2명(교대 근무), 상담사, 및 식당종사자를 포함하여 최소 운영인원은 5명 이상으로 보이나, 시행규칙상의 정원은 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, 생활지도사는 2명으로 1명이 부재(휴가 또는 결근) 시 다른 인원이 이를 대직하고 있는 실정임.
- 단기쉼터와 중장기 쉼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 조치를 할 수 없는바, 쉼터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24시간 보호·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쉼터의 인력운영을 규정한 평생교육국의 시행규칙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〈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[별표2]의 쉼터 정원 〉

| 연번 | 시설별 | 정원 계 | 일 반 직 | | | | | | | | | 기능직·고용직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|----|--|
| | | | 소계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소계 | 기능 | 고용 | |
| 29 | 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 | 12 | 12 | 1 | - | 1 | 2 | 2 | 4 | 2 | - | - | - | |
| 30 |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(여) | 4 | 4 | - | - | 1 | - | 1 | 2 | - | - | - | - | |
| 31 | 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| 10 | 10 | 1 | 1 | 1 | 1 | 3 | 2 | 1 | - | - | - | |
| 32 | 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| 4 | 4 | - | - | 1 | - | 1 | 2 | - | - | - | - | |

-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, 그 중 일부는 우울, 과도한 공격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,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,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고, 보다 효과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 하다고 하겠음.

- 쉼터의 지원은 학업, 자립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학용품 비용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적정한 여가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,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십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,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
- 평생교육국은 쉼터의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보장, 조직형태의 개선, 야간시간의 보호·관리 역량 강화,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의 분리 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, 전문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, 행정사무와 위기 청소년 보호·관리 사무의 분리 등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쉼터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,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2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,
-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
- 가출청소년의 보호·상담·선도·수련활동·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
-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
-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,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-16
- 시설규모 : 34.8평(115 m^2)
 - 지층 3.5평(11.5 m^2) / 1층 16.5평(54.7 m^2) / 2층 14.8평(48.9 m^2)
- 개소일자 : 2014. 04. 01
- 이용대상 :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(여, 정원 8명)
- 보호기간 : 3년 이내 중장기보호

○ 위치도



마. 위탁기간 : 3년 (2020.01.01 ~ 2022.12.31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: 302,016천원

- 인건비 89,208천원, 사업비 167,115천원, 운영비 45,693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(☎2133-4128)